

최신 판례 예규

조세특례제한법§128④(2)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함

사전법규소득-669, 2022.12.14

■ 질 의

- 질의인은 건설업/조경식재공사 와 서비스업/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 '20.1월 질의인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가맹대상에 편입되어 '21.5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함

질의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법정된 기한 내에 가입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가입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128④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대주주가 아닌 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매매거래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도세 과세대상 아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자본거래-4232, 2022.12.01

■ 질 의

- 신청인은 비상장법인인 중견기업의 주식을 장외거래로 취득하였으며, 해당 법인은 이후 K-OTC에 지정됨
- 신청인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 K-OTC를 통해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이 과세되는지 여부

■ 회 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

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자본거래-2880, 2022.08.23

■ 질 의

- (주)AAA의 주주가 (주)BBB에게 양도한 주식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인지 여부

■ 회 신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기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2010.07.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익금에 산입한 후 그 금액을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변제된 공익채권 중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인-8108, 2022.11.30

■ 질 의

- 질의법인은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X.XX.XX.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
- 질의법인이 근로자의 급여를 반납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익금(잡수입 등)으로 처리 후 그 재원을 공익채권* 등에 변제 할 예정
- *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관리인 등의 보수 등

질의

-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근로자의 반납 받은 급여를 공익채권에 변제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근로자로부터 반납 받은 급여를 익금에 산입한 후 그 금액을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변제된 공익채권 중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